



# 지롱 기계 전자 (북경) 유한공사 VS 씨에앤치앙, 북경 스포루이더 과학기술 유한책임공사 상업비밀침해 분쟁 사건

## 04

### 01 서지 사항

|               |   |       |                         |
|---------------|---|-------|-------------------------|
| 국가   법원       | 북경시 고급인민법원  | 사건번호  | (1999)高知终字第76号          |
| 판결 일자         | 2001년 12월 19일   | 판결 결과 | 원심 피고들의 상소청구 인용 (권리자 패) |
| 원심원고(상소인)     | 지롱 기계 전자 (북경) 유한공사 (일본계 외자기업)   |       |                         |
| 원심피고(상소인)     | 1. 북경 스포루이더 과학기술 유한책임공사, 2. 씨에앤치앙                                       |       |                         |
| 참조 법령         | 중화인민공화국 부정당경쟁법 제10조, 민법통칙 134조  |       |                         |
| 영업비밀          | JL2000 시스템 가격표, 고객명단, 계약서, 설계방안, 시스템 모니터링 프로그램                          |       |                         |
| 키워드 (Keyword) | 증거부족(证据不足), 합법적 경영활동(合法经营), 외자기업법(外资企业法), 경영범위(经营范围), 중국법률의 보호(中国法律的保护) |       |                         |

### 02 사건 개요

지롱 기계 전자 (북경) 유한공사(이하 '지롱공사')는 1992년 설립된 일본계 외자기업이고, JL2000 가격표, 고객명단, 감시 제어 프로그램 등의 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

씨에앤치앙은 13장의 디스크에 위와 같은 지롱공사의 상업비밀을 복제하여 북경 스포루이더 과학기술 유한책임공사(이하 '스포루이더 공사')에 누설하였고, 스포루이더 공사는 그 중 고객자료를 이용하여 10개 단위의 전력국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이에 지롱공사는 씨에앤치앙과 스포루이더 공사를 피고로 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에서 지롱공사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의 원, 피고 쌍방이 모두 상소하였다.

### 03 주요 쟁점

원심 원고(상소인)



원심 피고(상소인)

원심에서 일부 사실에 대해 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지룽공사가 외자기업법 규정을 위반하여 중국에서 위법 경영활동에 종사하였으므로 그 경영활동은 중국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지룽공사의 기술비밀과 경영비밀을 공개된 정보이거나 공개된 경로로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 04 판결 요지

지룽공사의 경영정보는 법률이 규정하는 상업비밀의 구성요건을 구비하였다. 그러나, 지룽공사는 중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일본 독자기업으로, 중국법률과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데, 위법 경영활동을 하였으므로, 중국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중국 법률 규정에 의하면, 대외 경제 무역 주관 부문 혹은 국무원이 권한을 부여한 심사 기준 기구에 의하지 아니하고, 외국투자기업이 중국 경제에서 4차군 이하의 마이크로웨이브 통신설비 경영활동에 종사해서는 아니 되며, 초과하여 심사 기준을 얻어서도 아니 되고, 심사 기준된 경영범위 내에서 상업 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그러나, 본 사건 지룽공사는 미국 공사와 이스라엘 공사를 대리하여 중국내에서 해당 상품을 조립하여 판매함으로써 사실상 수출 무역활동에 종사한 것이므로, 중국법률을 교묘히 피해나가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심사 비준한 경영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중국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심 원고 지룽공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 05 Key Point

---

본 판결에서는, 외자기업에 대하여 중국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중국법에 의한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

본 사건의 일본계 공사가 법률을 교묘히 피하여 심사 비준한 경영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상업비밀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에도 상업비밀로 보호를 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였다.

---

중국 법원이 외국계 기업에 비호의적인 태도를 가진다면 충분히 이용될 수 있는 논리인바, 중국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중국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중국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